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PET 용기를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금속과 결합한 포장재 사용 금지(안 제3조제5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음료·생수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('26년 10%)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 확대로 품질·신뢰성 개선소요 증대
- PET에 금속이 결합되어 재활용과정 혼입 시 선별·제거가 어려운 “PET캔*”의 사용 제한 필요성 제기

※ 근거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PET 용기를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금속과 결합한 포장재 사용 금지(안 제3조제5항 신설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저해요소 개선 전문가 간담회(4.28)
 - PET캔 등 재활용저해요소에 대한 원천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제기(시민사회, 재활용업체)
-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청회(7.1)
 - (재활용업계) 1%의 이물질이 전체 품질에 악영향, 현장 수선별로도 PET캔 선별이 불가능하므로 규제 필요.

- (학계·시민단체) 유럽, 호주 등 해외에서도 PET캔을 퇴출 대상 포장재로 선정,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사용규제 필요
- (카페·캔시머업계) 한 번 추진 시 다시 철회하는 혼선이 없도록 정책 방향 일관성 확보 당부, 충분한 유예기간 요구

라. 입법효과

-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 발생 억제, 재활용공정에서의 혼입에 따른 재생원료 오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최종처분 감축, 국가 자원순환체계 신뢰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카페·패스트푸드·제과업계(약 22,000개소) - 기후부 간 해당 규제에 따르는 사용제한과 동일한 내용의 MOU를 既 체결('26.7.13)하였음